

# 2021년도 제1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22.(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8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292건(안건번호 제2021-85359호~8716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85359호~85361호(순번 1번~3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상물 없이 우리말 자막 파일만 제공한 사안으로, 동 자막 파일이 이용자들이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로 판단되는 부분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85362(순번 4번)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온라인 콘서트 공연 '밀녹' 영상 판매 게시물을 올린 사안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85363호~85392호(순번 5번~34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85393호~86966호(순번 35번~1608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91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86967호~86968호(순번 1609번~1610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안전번호 86965호~86966호(순번 1607번~1608번)과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이므로 부결함.

안전번호 86969호~87160호(순번 1611번~1802번)는 웹하드 등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 2. 전차(제2021-18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회의록 일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록을 수정함.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29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802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3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방송) ‘●●●●●’, ‘◎◎◎◎◎’, ‘◇◇◇◇◇’의 각 자막 파일(.smi, .srt)을 영상물 없이 게시한 사안임. 총 3개의 게시물임. 사무처에서 확인한 결과, 2021. 7. 19. 현재 3건의 게시물은 모두 게시자에 의하여 삭제된 상태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에서 다수의 광고가 확인됨.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의 자막 파일이 게시되었고, 다수의 광고 배너가 게시되어 있었음. (게시물 삭제 전에 다운로드 받은 smi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보여주면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말 대사가 구간별로 싱크가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본 애니메이션 대사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자막 파일을 제작 및 전송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인 일본 애니메이션 대본(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원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임. 사안의 경우 게시자가 자막 파일을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송 중인 사실은 분명하므로 적어도 2차적저작물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동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판단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①자막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제공행위 자체를 영리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다수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게시물 이용에 따른 광고수익을 누리고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원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전송 중인 점(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 인정됨.

또한 ③국내 합법 시장에서 동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말 자막이 함께 제공되는바, 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불법복제된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외국어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경우 우리말 자막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영상만으로는 적절한 감상을 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은 합법적인 우리말 자막을 제공하는 합법 시장으로의 유인책이 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불법복제된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우리 심의위원회는 영상물 없이 자막 파일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우리 위원회의 고려요소 중 적극적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서 ①심의 대상 자막 파일은 smi 등의 파일로 제공 중인 바, 특정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전제로 하여 음성과 자막을 싱크하므로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심의대상 게시물을 비롯하여 블로그의 다수 게시물에서 광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배너가 확인되는 점, ③ 해당 블로그는 2021. 7. 19. 현재 심의대상 자막 파일을 포함하여 다수의 자막 파일을 제공 중인 점이 인정됨.

소극적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서 ①심의대상 자막 파일은 애니메이션 대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임은 분명하나 게시자가 직접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②애니메이션 중 순번 1번, 3번의 해당 회차는 합법 시장에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유통되고 있으며, 순번 2번의 경우에도 잠재적인 합법 시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③순번 1번 내지 3번의 각 애니메이션은 현재까지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의 최신 방영분으로, 저작권자가 권리행사 없이 장기간 방치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최신 저작물로서 시급하게 보호하여야 할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됨.

심의대상 자막 파일의 이용은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심의위원회의 합치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시정권고 판단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다만, 2021. 7. 19. 기준으로 각 게시물이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자막 파일은 영상저작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이 사안의 경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확립한 심의 기준에 따라 시정권고의 적극적 요소가 다수 인정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중고나라'(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이용자 '◆◆◆◆◆'가 '□□□□□'이라는 제목으로 걸그룹 '■■■■■'의 온라인 콘서트 공연을 녹화한 영상물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1건).

(순번 4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은 아니므로, 게시물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저작권 침해 정보'라고 함)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정보'라는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시정권고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과 같이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의 파일 공유 기능을 활용,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에게 반복하여 동일 저작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이용 제공하는 경우라야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화면, 재생화면과 같은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직접증거 없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의 모바일 앱에서 등록된 게시물이며, 앱에서 판매글을 등록하는 경우 카페에도 동시에 등록되는 것으로 보임. 현재 '▲▲▲▲▲'는 카페 내 거래의 경우 1:1 채팅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거래하며, 모바일 앱의 경우 1:1 채팅 또는 일반 쇼핑몰과 유사한 직접 안전결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즉 일반 카페에서의 게시물과 달리 댓글란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카페의 성질상 게시물의 목적 자체가 물건의 판매로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 자체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여 영리적 목적을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존하는 합법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 앱과 카페가 서로 연동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서로 연동되어 상품을 검색 및 거래할 수 있음.
- 강나래 전문위원: 유사사례로 '▽▽▽▽▽'라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앱과 ▼▼▼▼▼ 카페가 서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A 위원: 동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하게 되면 시정권고서가 ▲▲▲▲▲ 앱 운영자가 아니라 '▲▲▲▲▲' 카페가 있는 ▼▼▼▼▼로 가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가 개인정보 확보 등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를 통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제2021-10회 '♣♣♣♣♣' 사례에서는 댓글이 있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사례에서는 신고한 민원인이 판매자와 직접

대화한 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음. 한편 유사한 심의사례 중 악보 유료 판매 게시글에 대하여, 실제로 악보를 수취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상업적 목적 등 전반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시정 권고를 가결한 사례가 있음.

- A 위원: 만일 '▲▲▲▲▲' 앱은 앱대로 운영되고 있고, ▼▼▼▼▼의 '▲▲▲▲▲' 카페는 단지 해당 앱을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시정 권고가 가능한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 또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 권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기존의 유사사례에서는 침해정보에 대해 '댓글'을 간접증거의 대표적인 것으로 삼았는데, 이 경우에는 '댓글'이 없는 상황인데, '▲▲▲▲▲' 카페의 경우 처음부터 판매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또한 네이버 '▲▲▲▲▲' 카페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댓글을 통해서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고 1:1대화 또는 안전거래를 통하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일반 카페 게시물 사례와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에 올라가 있는 자체가 댓글과 같은 증거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음.
- B 위원: 합법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

니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삭제·전송중단의 대상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C, D 위원: 이견 없음.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5번~34번은 실명(1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등을 각각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39개 게시물이.

(순번 5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제4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18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3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단편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5번~3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34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35번~161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

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드래곤 에이지 : 인퀴지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2번은 웹하드에서 게임 '드래곤 에이지 : 인퀴지션'을 1,8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2014. 11. 18. 배급한 게임임. STEAM 사이트에서 44,000원에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공각기동대 : 고스트 인 더 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08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공각기동대 : 고스트 인 더 셸'을 170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6분 56초를 제공하고 있음.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2017. 3. 29. 배급한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더 그레이트 샹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299번은 모바일웹하드에서 영화 '더 그레이트 샹크'를 380캐시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31분 3초를 제공하고 있음.

(순번 1609번~1610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09번~161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순번 1607번~1608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1607번~1608번과 중복으로 심의요청된 사안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35번~161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609번~1610번은 부결하고, 순번 35번~1608번

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09번~1610번은 부결하고, 순번 35번~160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611번~180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공개한 영화 ‘◆◆◆◆◆◆’가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331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1611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웹하드에서 영화 ‘◆◆◆◆◆◆’를 게시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mkv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1611번~1802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611번~1802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611번~1802번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11번~180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86967호~86968호(순번 1609번~1610번)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85359호~86966호(순번 1번~1608번), 86969호~87160호(순번 1611번~180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7쪽부터 22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유튜브 영상 불법성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호(순번 1번)에 대해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2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